

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762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7622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2012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권용모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4. 18.

판결 선고 2024. 5. 9.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가단2012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7,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원고와 C은 2015. 9.경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주식 및 공장용지, 건물, 설비 등을 양도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마쳤으므로, C은 양도대금 중 잔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886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4. 23. 'C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1.부터 각 2020. 3. 13.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5.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의 파산 및 면책 신청 등 경과

C은 2018. 6. 21.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2547, 2018하면254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12. 1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12. 27.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C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E 주식회사 등 5개 법인 채권자의 채권액 원금 755,370,038원,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920,510,132원 등 합계 1,657,880,17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C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C과 피고의 모(母)인 F이 2020. 3. 28. 사망하자 C을 포함한 위 F의 상속인들(각 법정 상속지분 1/5)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4. 16. 접수 제17997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채권최고액 48,000,000원, 근저당권자 (주)G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2,090,000원, 근저당권자 (주)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인 2020. 4. 2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20. 4.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의 소(訴)의 요건 중 하나인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C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잔금 4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 30. 원고에게 D 주식회사 소유의 안성시 I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 채무자를 위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② C이 1차 잔금(200,000,000원)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2.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③ 그러자 C은, 원고가 공장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K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14억 원에 대한 포기서를 C에게 받아 주는 것'을 원고의 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C도 원고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는 2015. 9.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본인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14억 원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C에게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1),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다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서울회생법원 2024하단363, 2024하면363호로 재차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C의 재차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하고 있는바, C의 재차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일(2018. 12. 27.)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C의 재차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면책이 허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이 무자력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① 채권최고액 48,000,000원, 근저당권자 (주)G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2,090,000원, 근저당권자 (주)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인 2020. 4. 24.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제1심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 법원의 (주)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은 21,863,099원(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0,341,489원 + ②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521,610원)이고,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6. 1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21,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시세가 다소 하락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은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21,000,0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1,863,099원을 뺀 99,136,901원(= 121,000,000원 - 21,863,099원) 중 C의 법정상속분(1/5)에 해당하는 19,827,380원(= 99,136,901원 x 1/5, 원 미만 버림)이 원고 등 C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한다.

4)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담보가액 19,827,3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27,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운

판사권성우

판사이민영

별지

1) C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6328 면책확인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2. 9. C의 위 청구 중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C이 위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갑 제6호증), 이에 대하여 C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171)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